

투자위험등급 : 1 등급
[매우 높은 위험]

도이치자산운용(주)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 등급(매우 높은 위험)에서 5 등급(매우 낮은 위험)까지 투자위험등급을 5 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른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신 후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간이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도이치 DWS 프리미어 넥스트 이머징(Next Emerging)증권 자투자신탁(주식)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중 중요사항을 발췌한 요약 정보를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이치 DWS 프리미어 넥스트 이머징(Next Emerging)증권 자투자신탁(주식)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반드시 증권신고서 또는 정식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도이치 DWS 프리미어 넥스트 이머징(Next Emerging)증권 자투자신탁(주식)
2. 집합투자업자 명칭 : 도이치자산운용(주)
3. 판매회사:
농협중앙회, 리딩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외환은행, 유진증권, 하나대투증권, 하나은행, 현대증권
4. 작성 기준 일 : 2009년 2월 28일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09년 5월 03일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10조좌
[모집(매출) 총액 :]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일괄신고서를 제출하는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금융위(금감원)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집합투자업자홈페이지→www.deam-korea.com,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
서면문서 : 집합투자업자, 금융위원회, 각 판매회사
9.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 관련) : 해당사항 없음

*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효력발생일까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모집(판매)예정 기간
3. 모집(판매)예정 금액
4. 펀드존속기간
5. 분류
6. 집합투자업자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주요 투자대상
2.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3. 수익구조
4. 주요투자위험
5.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6. 투자운용인력
7. 투자실적 추이 (세전기준)

III. 매입 환매 관련 정보

1. 수수료 및 보수
2. 과세
3. 기준가격 산정 및 매입 환매 절차

IV. 요약 재무 정보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6.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판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8.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간이투자설명서

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1. 명 칭

도이치 DWS 프리미어 넥스트 이머징 (Next Emerging) 증권 자투자신탁 (주식)					
(종류) 클래스	종류 A	종류 C1	종류 C-I	종류 C-e	종류 C-W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72049	72050	80026	74715	93914

2. 모집예정기간 :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 모집 개시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업일에 한하여 모집 및 판매됩니다.

3. 모집예정금액 : 10 조좌

- 주 1) 모집(판매)기간은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 판매 가능합니다.
주 2) 모집(판매)기간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주 3) 모집(판매)예정금액이 줄거나 판매 예정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운용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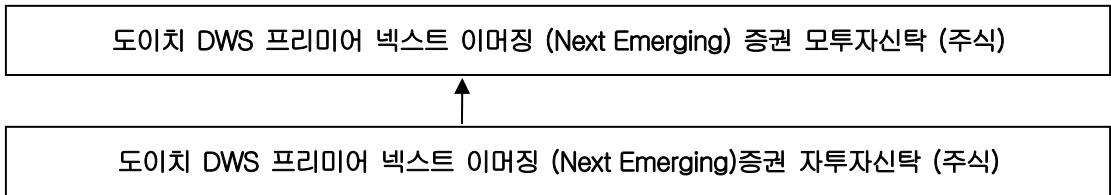
4. 펀드존속기간 :

이 투자신탁은 추가 자금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익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 등의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주 1) 법령 또는 집합투자규약에 의거 1 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00 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강제로 해지(해산)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해산)될 수 있습니다.

5. 분류 :

- 가. 형태별 종류: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증권(주식)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개방형(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라. 추가형. 단위형구분: 추가형(추가로 자금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마. 특수형태 표시: 종류형(판매보수 등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투자신탁)
모자형(모투자신탁이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구조의 투자신탁)
주 1)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 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습니다



6. 집합투자업자

회사명	도이치자산운용(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종로구 서린동 33 영풍빌딩 19 층 (대표전화:02-724-7400)

[모 투자신탁의 업무의 위탁]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자산 중 외국에서 발행 또는 창설되거나 유통되는 외국통화표시자산에 대한 업무를 아래와 같이 위탁하고 있으며, 업무 위탁에 따른 책임은 위탁한 집합투자업자에게 있습니다.

(1) 업무 위탁 운용사 및 내용

해당펀드	도이치 DWS 프리미어 넥스트 이머징 (Next Emerging)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해외위탁운용사	디더블류에스 파이낸스 서비스 지엠비에이치 (DWS Finanz-Service GmbH)
업무위탁범위	외국통화표시자산에 대한 운용업무, 운용지시, 단순매매주문업무 등

(2)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 개요

해외위탁운용사명	디더블류에스 파이낸스 서비스 지엠비에이치 (DWS Finanz-Service GmbH)
주요 주주	디더블류에스 홀딩스 & 서비스 (DWS Holding & Service GmbH)
회사 연혁	설립일: 1992.9.30. KABA Beteiligungsgesellschaft mbH 설립 사명변경: 1997.1.29 자로 현 DWS Finanz-Service GmbH로 사명변경
회사 주소	Mainzer Landstraße 178–190 Frankfurt am Main, Germany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주요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주요 내용
1)모투자신탁	100%이하	도이치 DWS 프리미어 넥스트 이머징(Next Emerging)증권 모투자신탁 (주식)

		(상기 투자신탁에 대한 비중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단기 대출 및 금융기관 예의 예치	10%이하	<p>법 제83조 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만기가 1년 이내인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 예의 예치</p> <p>단,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들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이하의 범위 내에서 1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p>
3)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법 시행령 제26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주요투자대상

“도이치 DWS 프리미어 넥스트 이머징(Next Emerging)증권 모투자신탁(주식)”에 적용되는 투자대상 및 투자한도

투자대상	투자비율	주요내용
1) 주식	60%이상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중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및 법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9조제15항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등에 한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이하 “주식”이라 한다)
2) 집합투자증권	5%이하 (단, ETF는 30%까지 투자 가능)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이하 “집합투자증권등”이라 한다) (단, ETF는 30%까지 투자 가능, 외화자산에만 운용하는 집합투자증권 20%까지 가능)
3) 파생상품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이하	<p>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주식•통화나 주식•통화의 가격,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이하 “장내파생상품”이라 한다)</p> <p>법 제5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외파생상품으로서 주식•통화나 주식•통화의 가격,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이하 “장외파생상품”이라 한다)</p>
4) 자본 시장법 시행령 268조 제3항에 의해 집합투자재산을 투자대상 자산에 운용하고 남은 현금을 신탁업자가 자신의 고유재산과 거래		
5) 기타		<p>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단기대출 (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2. 금융기관 예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정됨) 3. 상기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

2.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투자목적

-자 투자신탁

이 투자신탁은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모투자신탁에서 투자하고 있는 투자대상국가 주식의 가격상승에 따른 수익추구를 목적으로 합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도이치 DWS 프리미어 넥스트 이머징(Next Emerging)증권 모투자신탁(주식))

이 투자신탁은 이머징 국가 (방글라데시, 이집트, 인도네시아, 이란, 한국, 멕시코,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필리핀, 터키, 베트남)에서 발행되어 상장 또는 등록되어 있는 주식 및 그 밖의 국가에 상장된 이머징 국가의 법률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주식에 주로 투자하여 투자대상국가 주식의 가격상승에 따른 수익추구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떤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2)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모투자신탁의 주요 투자전략 : 도이치 DWS 프리미어 넥스트 이머징(Next Emerging)증권 모투자신탁(주식)

국내주식 및 해외주식에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투자하며, 이머징 국가 (방글라데시, 이집트, 인도네시아, 이란, 한국, 멕시코,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필리핀, 터키, 베트남)에서 발행되어 상장 또는 등록되어 있는 주식 및 그 밖의 국가에 상장된 이머징 국가의 법률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주식에 주로 투자합니다.

환위험 관리전략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외화 표시자산에 투자할 수 있으므로 해당 표시 통화와 원화 간의 환율변동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 통화의 환율변동으로 당해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자산운용사는 환헤지를 수행하며 해지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된 해지수단은 국내시장 및 해외시장의 통화선물등을 이용하여 해지할 예정입니다.

-환헤지 전략-

가. 달러화, 유로화, 엔화 및 파운드화 표시 자산 : 목표 환헤지 비율은 투자금액의 50% 수준이지만, 시장상황 등에 따라 환헤지 비율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나. 기타통화 표시자산: 원칙적으로 해지를 하지 아니합니다. 단, 해지방법, 해지효과 등을 고려하여 운용사가 해지전략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상기 해지전략 및 비중은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환헤지전략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해당국 통화의 가치가 올라가는 경우에는 투자자들이 환차익을 얻을 수 있으나, 목표

환해지 비율대로 환해지를 실시하는 경우 오히려 추가적 이익기회가 상실될 수 있습니다.

※환해지 계획에도 불구하고 환해지 거래상대방의 거래불능 상황 또는 해당 통화의 거래가 일시적 혹은 상당기간 시장에서 거래되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등 환해지 전략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지 거래가 전액 실행되지 못하거나 환율변동 위험이 감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추가형,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수시로 입출금이 이루어지는 등 환해지를 위하여 파생상품에 투자하더라도 환율변동위험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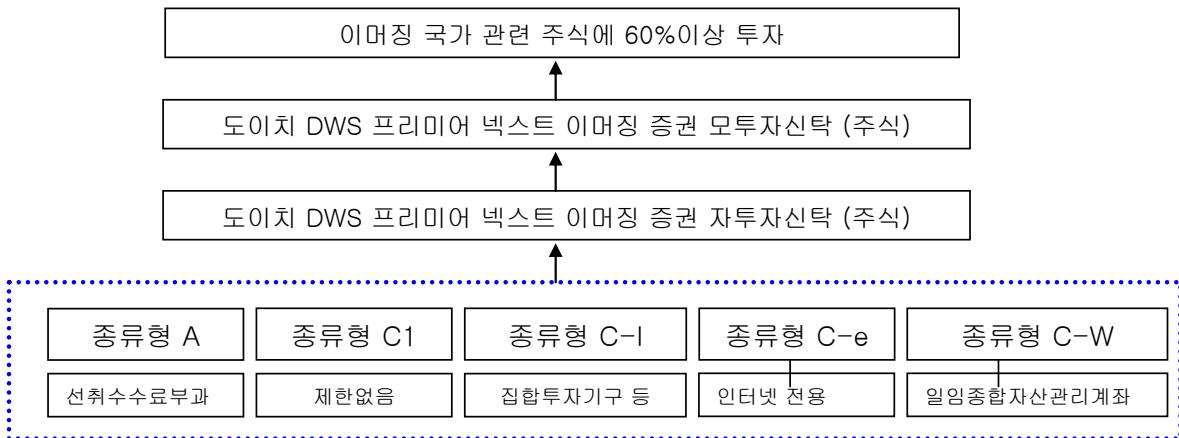
비교지수: MSCI EM Index 95% + 콜금리 5%

(MSCI 지수: 모건스탠리의 자회사 MSCI (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가 작성하여 발표)

이미징 지역의 선별된 우량주 위주로 구성하여 지수화한 MSCI EM Index는 이미징 시장에 투자하는 이 투자신탁의 성과 비교를 위해 비교지수로 선택되었습니다. 그러나 비교지수는 회사의 판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법제89조제2항에 따라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3.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100% 이하 (실질 투자 비중 90% 이상)를 모두자신탁이 발행하는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으로서 모두자신탁의 운용실적에 따라 주된 이익 또는 손실이 결정됩니다.



4. 주요 투자위험

아래의 투자위험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두자신탁의 투자위험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상품가입시 반드시 인지해야 할 위험들을 상세히 기재하고 있으나, 아래의 내용이 이 집합투자기구에 의한 투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 일반위험

구 분	주 요 내 용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 실적에 따른 실적배당상품으로 관련법령은 이에 대해서는 원리금을 보장하거나 보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합니다.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해외주식등 가격변동 위험	개별 해외 국가의 법률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해외주식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운용성과는 동 국가들의 주식의 가격변동에 의해 결정됩니다.
환율변동 위험	<p>이 투자신탁의 외화 표시자산에 투자할 수 있으므로 해당 표시 통화와 원화 간의 환율변동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 통화의 환율변동으로 당해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자산운용사는 환헤지를 수행하며 해지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된 해지수단은 국내시장 및 해외시장의 통화선물등을 이용하여 해지할 예정입니다.</p> <p>-환헤지 전략-</p> <p>가. 달러화, 유로화, 엔화 및 파운드화 표시 자산 : 목표 환헤지 비율은 투자금액의 50% 수준이지만, 시장상황 등에 따라 환 헤지 비율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p> <p>나. 기타통화 표시자산: 원칙적으로 해지를 하지 아니합니다. 단, 해지방법, 해지효과 등을 고려하여 운용사가 해지전략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p> <p style="color: blue;">※ 상기 해지전략 및 비중은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환헤지전략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p> <p style="color: red;">※ 해당국 통화의 가치가 올라가는 경우에는 투자자들이 환차익을 얻을 수 있으나, 목표 환헤지 비율대로 환헤지를 실시하는 경우 오히려 추가적 이익기회가 상실될 수 있습니다</p> <p>환헤지 계획에도 불구하고 환헤지 거래상대방의 거래불능 상황 또는 해당 통화의 거래가 일시적 혹은 상당기간 시장에서 거래되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등 환헤지 전략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지 거래가 전액 실행되지 못하거나 환율변동 위험이 감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p> <p>이 투자신탁은 추가형,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수시로 입출금이 이루어지는 등 환헤지를 위하여 파생상품에 투자하더라도 환율변동위험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p>
거래상대방 및 신용위험	이 투자신탁 재산의 가치는 투자신탁 재산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 유가증권, 파생상품, 단기 금융상품을 발행한 개별회사가 신용등급의 하락 또는 부도 등과 같은 신용사건에 노출되는 경우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특수위험

구 분	주 요 내 용
시장위험 및 개별유가증권 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대상 국가의 지정학적 위험 및 투자유가증권의 가치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관련 증권시장의 법령 및 제도의 급격한 변화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국가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하는 국가 등의 정치적, 법적, 경제적 또는 규제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국가 위험에 노출됩니다.

다. 기타 투자위험

구 분	주 요 내 용
환매위험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대금결정일까지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유동성 위험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할 경우 투자대상종목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의 결여가 투자신탁재산 가치의 하락을 초래할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퍼레이션 위험	해외투자의 경우 국내투자와 달리 시차에 의한 시장폐장 및 개장시기의 차이로 인해 신탁재산의 평가에 있어 시차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복잡한 결제과정 및 현금 운용과정에서 운용적인 위험이 국내투자보다 더 높습니다.
해외자산 투자관련 가격평가위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해외자산과 관련, 발행자, 자산보관 및 수탁업무를 취급하는 기관, 기타 가격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 등이 해당자산의 가격 및 수량 등 기준가 계산에 필요한 정보를 잘못 또는 지연하여 공시하거나 통보하는 등의 오류가 발생할 경우, 그러한 사유들은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 산정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다른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은 정식투자설명서를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5.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유형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원본손실 가능성은 기준으로 펀드의 위험등급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본손실가능성의 판단기준으로는 가격하락위험, 신용위험, 유동성 위험, 집중위험 등이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채권등에 비하여 가격변동성이 큰 위험이 있으므로 은 주로 해외에 상장·등록 또는 거래되는 유가증권 등에 주로 투자하므로 5 등급중 1 등급에 해당되는 매우 높은 위험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해당투자신탁 투자대상 국가의 경제여건의 변화와 주식의 가치변동이 상관관계가 있음을 이해하며 외국통화로 표시된 투자대상 국가의 주식과 관련된 높은 수준의 투자위험을 감내할 수 있고 투자원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을 잘 아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투자위험등급 기준>

등급	위험수준	내용
1 등급	매우 높은 위험	-주식(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 포함)에 60% 이상 투자하는 투자신탁 -주식(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 포함)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에 60%이상 투자하는 투자신탁 -구조화된 파생상품투자신탁(원금보존형 포함)
2 등급	높은 위험	-주식(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 포함)에 60%이하 투자하는 투자신탁 -주식(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 포함)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에 60%이하 투자하는 투자신탁
3 등급	중간 위험	-주식(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 포함)에 30%이하 투자하는 투자신탁 -주식(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 포함)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에 30%이하 투자하는 투자신탁
4 등급	낮은 위험	-국공채 및 회사채 등 채무증권에 투자하는 증권투자신탁
5 등급	매우 낮은 위험	-MMF

6. 운용전문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수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규모	
이정원	1974	차장	98	18,599(억좌)	도이치자산운용 운용팀 (2005.06 ~)

주 1)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해외자산운용팀이 담당하며,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에 주도적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책임운용전문인력입니다.

(주 2)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수 및 규모를 산정할 때 모자형구조의 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합니다.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수 중 성과보수가 있는 집합투자기구 운용 규모: 해당사항 없음

[위탁운용사 운용전문인력]

펀드매니저	Rainer Vermehren, Director 이머징 마켓 담당, 프랑크푸르트, 독일
운용자산규모	운용규모: Euro 69.838 mn (2008년말 기준)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DWS GO EM Asien Immobilien Total Return Index Zertifikat DWS GO BRIC Immobilien Total Return Index Zertifikat DWS GO Lateinamerika Top Dividende TR Index Zertifikat DWS GO EM Europa Immobilien Total Return Index Zertifikat
과거운용경력	1997 DWS Investment 입사 1994-97 라틴아메리카 펀드 운용 팀, Morgan Stanley, NY, USA 美 메릴랜드 대학 학사, NY Fordham 대학 MBA

7. 투자실적 추이(세전 기준)

(1) 연평균 수익률(세전 기준) (단위:%)

기간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08.03.01 ~09.02.28				07.07.30 ~09.02.28
투자신탁전체	-45.26				-22.50
종류 A	-46.43				-24.07
종류 C1	-47.06				-24.92
종류 C-e	-46.81				-35.89
종류 C-I	-45.86				-45.33
종류 C-W	작성일 현재 미설정 상태입니다.				
비교지수	-45.03				-30.28

주 1)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은 보수 및 수수료 차감전 수익률입니다.

주 2) 설정일 이후 수익률의 경우 각 종류별로 설정시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수익률의 편차가 커질 수 있습니다.

주 3)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비교지수: MSCI EM Index 95% + 콜금리 5%)

(2) 연도별 수익률 추이(세전 기준) (단위:%)

기간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 5년차
	08.03.01 ~09.02.28	07.07.30 ~08.02.29			
투자신탁전체	-45.26	22.03			
종류 A	-46.43	20.71			
종류 C1	-47.06	19.99			
종류 C-e	-46.81				
종류 C-I	-45.86				
종류 C-W	작성일 현재 미설정 상태입니다.				
비교지수	-45.03	2.77			

주 1) 위의 수익률은 해당 기간의 기간수익률이며 종류별로 운용기간이 표 상단에 기재된 기간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수익률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주 2)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은 보수 및 수수료 차감전 수익률입니다.

주 3)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비교지수: MSCI EM Index 95% + 콜금리 5%)

*** 연평균 수익률 및 연도별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III 매입·판매관련 정보

1. 수수료 및 보수

-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되며, 가입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 중개업자)로부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받고 설명받으셔야 합니다.

(1)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구분	지급비율 (연간, %)					비고 (지급시기)
	A	C1	C-I	C-e	C-W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의 1.00%	없음			매입시	
환매수수료	90일 미만 - 이익금의 70% 90일 이상 - 없음 (보유기간에 따라 이익금 기준 정수)			환매시		

주 1) 이익금: 원본좌수에서 발생한 이익금 (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한다)

(2)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명칭(클래스)	가입자격	구분	부과비율 (연간, %)	부과시기
A	선취판매수수료 징구	집합투자업자보수	0.8400	최초설정일로 부터 매 3 개월 후급
		판매회사보수	0.9600	
		신탁업자보수	0.0600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0.0250	
		기타비용	0.0120	사유 발생시
		총보수 · 비용	1.8970	-
		합성 총보수 · 비용*	2.5140	-
		증권 거래비용	0.1203	사유 발생시
C1	제한없음	집합투자업자보수	0.8400	최초설정일로 부터 매 3 개월 후급
		판매회사보수	1.9600	
		신탁업자보수	0.0600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0.0250	
		기타비용	0.0193	사유 발생시
		총보수 · 비용	2.9043	-
		합성 총보수 · 비용*	3.4349	-
		증권 거래비용	0.1637	사유 발생시
C-e	온라인가입자	집합투자업자보수	0.8400	최초설정일로 부터 매 3 개월 후급
		판매회사보수	1.5600	
		신탁업자보수	0.0600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0.0250	
		기타비용	0.0298	사유 발생시
		총보수 · 비용	2.5148	-
		합성 총보수 · 비용 *	2.9417	-
		증권 거래비용	0.1799	사유 발생시
C-I	변액보험, 기관투자자기금, 100 억 이상 매입한 개인, 500 억 이상 매입한 법인	집합투자업자보수	0.8400	최초설정일로 부터 매 3 개월 후급
		판매회사보수	0.0300	
		신탁업자보수	0.0600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0.0250	
		기타비용	0.0027	사유 발생시
		총보수 · 비용	0.9577	-
		합성 총보수 · 비용*	1.3696	-
		증권 거래비용	0.2384	사유 발생시
C-W (미설정)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	집합투자업자보수	0.8400	최초설정일로 부터

좌를 통하여 가입한 자			매 3 개월 후급
	판매회사보수	0.0000	
	신탁업자보수	0.0600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0.0250	
	기타비용	0.0120	사유 발생시
	총보수 · 비용	0.9370	-
	합성 총보수 · 비용 *	1.5540	-
	증권 거래비용	0.1203	사유 발생시

(주 1)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 (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 2007.07.30 ~ 2008.07.29]

(주 2)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 2007.07.30 ~ 2008.07.29]

(주 3)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발행분담금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 4) 총보수 · 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 5) 합성 총보수 · 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이 모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투자신탁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 6) 종류형 C-W 수익증권은 작성일 현재 미설정 수익증권으로서 이 종류형의 기타비용, 합성 총보수 비용 및 증권거래 비용은 종류형 A수익증권의 비용을 추정치로 사용하였습니다. 따라서 실제 본 C-W 종류형 수익증권의 설정 후 발생 비용은 상기 표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1,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 · 비용의 투가기간별 예시
(단위:천원)

구분	투자기간				
	1 년후	3 년후	5 년후	10 년후	
종류형 A	판매수수료 및보수·비용	355	879	1,428	2,922
종류형 C1	판매수수료 및보수·비용	352	1,072	1,813	3,765
종류형 C-e	판매수수료 및보수·비용	302	923	1,569	3,299
종류형 C-I	판매수수료 및보수·비용	140	436	754	1,654

종류형 C-W (미설정)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95	299	524	1,193
------------------	------------------	----	-----	-----	-------

(주 1) 투자자가 1,000 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총보수·비용을 누계적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과세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세금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투자신탁에서 납부한 채권 등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모두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펀드가 일정요건 ¹⁾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증권거래세 등의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투자신탁의 투자자는 과표기준가를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과표기준가격이란 세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가격으로 신탁재산의 운용수익 중 채권이자에 대한 이자소득, 주식의 배당에 대한 배당소득 등 과세대상 수익만을 고려하여 산출합니다. 이는 판매회사 영업점,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홈페이지 등에서 기준가격과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익자는 투자신탁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하는 날, 또는 계약을 연장하는 날에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됩니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의 과세상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유가증권 시장 및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채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7년 6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거주자에 한하여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외국상장주식의 매매·평가 손익도 수익자의 과세대상 이익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국내외상장주식 등에 대한 손익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수익자 입장에서는 투자손실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국내외상장주식 등의 매매·평가 손실이 채권이자, 주식배당, 비상장주식 평가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보다 큰 경우

(나) 2007년 6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외국상장주식의 평가 이익보다 2007년 6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외국상장주식의 평가 손실이 더 큰 경우 (: 2007년 6월 1일

이전 가입한 수익자에 한하여 2007년 6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외국상장주식 평가 이익부분은 수익자의 과세대상 이익에 포함)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개인 15.4% (주민세 포함), 일반법인 14%

거주자 개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주민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형별 소득을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최고한도 세율 35%)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수입금액과 다른 법인 수입금액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은 정부 정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증권거래세 면제대상 범위가 변경됨에 따라 이 투자신탁의 경우 공모투자신탁임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일정요건¹⁾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주 1) [증권거래세의 면제요건]

증권거래세의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 법 제9조제7항 및 제9항에 따른 모집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같은 법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할 것

나. 법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한 투자자 수가 30인을 초과할 것

다. 30인(집합투자자가 150인 미만인 경우에는 그 전체 집합투자자 수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수) 이하의 집합투자자가 해당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가 발행한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95 이상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3. 기준가격 산정 및 매입·판매 절차

(1) 기준가격 산정

구 분	내 용
기준가격 산정방법	당일 발표하는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이라 합니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당해 종류 수익증권]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Class 간 기준가격이 상이한 이유	펀드 간 판매 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펀드 Class 간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기준가격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없는 종류수익증권의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산정·공지하지 아니합니다.
기준가격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기준가격 공시방법 및 공시장소	판매회사 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deam-korea.com)·판매회사,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

(2) 매입 및 환매 절차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투자신탁의 매입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납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 (가) 오후 17시 이전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의 다음 영업일에 발표하는 수익증권 기준가격 적용
- (나) 오후 17시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 (다) 단,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합니다.

수익증권의 환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환매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 (가) 오후 17시 이전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4영업일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9영업일에 환매금액 지급
- (나) 오후 17시 이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5영업일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10영업일에 환매금액 지급
- (다) 판매회사가 해산, 허가 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 (이하 “해산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환절차 및 방법

해당사항 없음

IV 요약 재무정보

대차대조표[단위 : 원]

항 목	제 2 기	제 1 기
	(2009.01.29)	(2008.07.29)
운용자산	13,555,093,971	9,552,902,250
증권	13,472,474,747	9,468,973,879
파생상품	0	0
부동산/실물자산	0	0
현금 및 예치금	79,978,885	73,663,339
기타 운용자산	2,640,339	10,265,032
기타자산	0	0
자산총계	13,555,093,971	9,552,902,250
운용부채	3,504,385	11,923,398

기타부채	0	1,090
부채총계	3,504,385	11,924,488
원본	23,058,618,078	8,553,446,767
수익조정금	148,898,101	1,230,880,133
이익잉여금	-9,804,824,694	-1,474,229,271
자본총계	13,402,691,485	8,310,097,629

손익계산서[단위 : 원]

항 목	제 2 기	제 1 기
	(2008.07.30 – 2009.01.29)	(2007.07.30 – 2008.07.29)
운용수익	-9,655,036,405	-241,589,138
이자수익	2,286,103	2,215,683
배당수익	0	0
매매/평가차익(손)	-9,657,322,508	-243,804,821
기타수익	0	0
운용비용	0	0
관련회사 보수	0	0
매매수수료	0	0
기타비용	890,188	1,760,000
당기순이익	-9,655,926,593	-243,349,138
매매회전율	0.00	0.00

*제 2 기 자료는 1년미만 경과로 반기 자료를 작성하였습니다.